

<대법원 긴급조치 국가배상 판결 규탄 기자회견>

고도의 정치성을 띤 판결,  
대법원 유신 면죄부 판결을 규탄한다

[기자회견-자료집]

보도자료                    3쪽  
법률의견서                4쪽  
기자회견문                10쪽

[기자회견 순서]

사회	차준원 (계승연대 이사)
여는 말	백기완 (통일문제연구소 소장)
대법원 판결에 비판적 검토	조영선 (긴급조치 변호단 간사/변호사)
대법원 판결의 문제점	한상희 (건국대 교수)
긴급조치 피해자 발언 1	장영달 (민청학련 계승사업회)
긴급조치 피해자 발언 2	김종채 (긴급조치 피해자 대책위)
각계 인사 발언	
긴급조치 기자회견문 낭독	박몽구 (긴급조치 피해자 대책위) 이단아 (계승연대 집행위원장)

2015. 3. 30.

민변 긴급조치 변호단, 긴급조치 피해자 대책위,  
4.9통일평화재단, 포럼진실과정의,  
민주화운동정신계승국민연대, 장준하특별법제정시민행동,  
한국전쟁유족회, 역사정의실천연대



[보도자료] 대법원 긴급조치 국가배상판결 규탄 기자회견

고도의 정치성을 띤 판결,  
대법원 유신 면죄부 판결을 규탄한다!!!

지난 3. 26.(목), 대법원(대법원 민사 제3부 재판장 박보영, 주심 권순일, 민일영, 김신대법관)은 긴급조치 9호가 사후적으로 법원에서 위헌.무효로 선언되었다고 하더라도, '유신헌법에 근거한 대통령의 긴급조치권 행사는 고도의 정치성을 띤 국가행위'로써, '대통령의 이러한 권력행사가 국민 개개인에 대한 관계에서 민사상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없다'면서 대통령의 긴급조치 발동행위에 대하여 고의과실을 인정한 원심을 파기하고 대전지방법원으로 환송하였습니다.

이는 발동요건 및 목적이 현행 헌법뿐만 아니라 당시 헌법 제53조에 위반하여 '당초부터 위헌'이었다는 전원합의체 및 헌법재판소 결정을 뒤집은 것으로서, 결국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음을 선언한 것입니다. 고작 판단이유 6줄로 '서둘러' 면죄부를 주기위해 쓴 '고도의 정치적' 판결에 다름 아닙니다.

이에 긴급조치 변호단, 긴급조치 피해자 대책위, 과거사 단체는 대법원 판결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개최코자 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일시 2015. 3. 30.(월) 14:00  
장소 대법원 정문 앞  
단체 민변 긴급조치 변호단, 긴급조치 피해자 대책위, 4.9통일평화재단,  
포럼진실과정의, 민주화운동정신계승국민연대, 한국전쟁유족회,  
장준하특별법제정시민행동, 역사정의실천연대

기자회견 순서

사회	차준원 (계승연대 이사)
여는 말	백기완 (통일문제연구소 소장)
대법원 판결에 비판적 검토	조영선 (긴급조치 변호단 간사. 변호사)
대법원 판결의 문제점	한상희 (건국대 교수)
긴급조치 피해자 발언 1	장영달 (민청학련 계승사업회)
긴급조치 피해자 발언 2	김종채 (긴급조치 피해자 대책위)
각계 인사 발언	
긴급조치 기자회견문 낭독	박몽구 (긴급조치 피해자 대책위) 이단아 (계승연대 집행위원장)

2015. 3. 30.

민변 긴급조치 변호단, 긴급조치 피해자 대책위, 4.9통일평화재단, 포럼진실과정의, 민주화운동정신계승국민연대, 장준하특별법제정시민행동, 한국전쟁유족회, 역사정의실천연대

## [대법원 긴급조치 국가배상판결 규탄 기자회견 - 법률 의견서]

### 고도의 정치성을 띤 대법원 유신 면죄부 판결을 규탄한다 !!!

조영선 변호사(민변 긴급조치 변호단 간사)

#### 1. 원고에 대한 불법체포, 감금

원고는 00대학교에 재학 중이던 1978. 6.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 소재 하숙집에 있었는데, 중앙정보부 소속 공무원들이 위 하숙집에 찾아와 원고에게 수사관서까지 동행을 요구하였고, 이에 원고는 위 공무원들에 의해 당시 서울 남산에 소재하고 있는 중앙정보부 건물로 끌려갔다. 원고는 1978. 6.경부터 약 20여 일 간 위 중앙정보부에서, 그 친구인 소외 00에게 유신 체제에 대한 비판적인 내용의 편지를 보낸 것 등에 대한 이유에 대해 조사를 받으면서, 법관의 영장 없이 구금되어 있었다.

#### 2. 원고에 대한 재판 경과

##### 가. 원심의 재판 경과

원고는 2011.4.22. 대전지방법원에 금1000만원의 국가배상청구를 했고 1심은 이유 없이 기각(대전지방법원 2011.12.19.선고2011가소59606 판결. 김석범 판사)하였다.

항소심(대전지방법원 2012.5.3.선고 2012나974판결, 민사 항소 제2부, 재판장 심준보, 이보람, 전경세)은 중앙정보부 수사관의 동행요구에 심리적 압박에 의해 행해진 불법 체포이며, 영장 없이 중앙정보부에 20일간 구금한 것은 역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판시한 후, 긴급조치 제9호가 그 발동 요건 및 목적상의 한계를 벗어나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헌법상의 기본질서인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반하는 것이고, 유신헌법에 의하더라도 그 내용이 헌법의 문언에 명백히 위반되며, '대통령이 긴급조치 제9호를 발령한 행위는 대통령의 헌법수호의무를 위반한 것'이므로 '긴급조치 제9호를 발령한 대통령에게 고의 내지 과실이 인정'된다면서, 원고의 국가배상청구를 인용하였다.

아울러 원심법원은 피고 대한민국의 소멸시효 항변에 대하여 적어도 원고는 대법원

긴급조치 1호 위헌판결이 있기까지는 소제기한다는 점을 일반적으로 기대할 수 없는 점 등을 이유로 배척하였다.

## 나. 대법원 판결내용

지난 3.26 대법원(2014.3.26.선고 2012다48824판결. 대법원 민사 제3부 재판장 박보영, 주심 권순일, 민일영, 김신대법관)은 '긴급조치 9호가 사후적으로 법원에서 위헌. 무효로 선언되었다고 하더라도, 유신헌법에 근거한 대통령의 긴급조치권 행사는 고도의 정치성을 띤 국가행위로서 대통령은 국가긴급권의 행사에 관하여 원칙적으로 국민전체에 대한 관계에서 정치적 책임을 질 뿐 국민 개개인의 권리에 대응하여 법적 의무를 지는 것은 아니므로, 대통령의 이러한 권력행사가 국민 개개인에 대한 관계에서 민사상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는 볼 수 없다'고 판시하고, 대통령의 긴급조치 발동행위에 대하여 고의과실을 인정할 원심을 파기하고 대전지방법원으로 환송하였다.

한편, 대법원은 수사권 없는 중앙정보부 요원에 의한 체포·구금행위를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면서도, 원고의 체포·구금상태가 종료한지 30년이 경과한 점 등을 이유로 피고 대한민국의 소멸시효 항변을 인용하였다.

## 3. 유신의 품에 안긴 대법원 판결

### 가. 6줄로 쓴 고도의 정치성을 띤 指鹿爲馬 판결

이미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010.12.16.선고 2010도5986판결)은 '고도의 정치성을 띤 국가행위, 이른바 통치행위라 하여 사법심사를 스스로 억제할 수 있다 하더라도, 기본권 보장, 법치주의 이념을 구현하여야 할 법원의 책무를 포기하여서는 아니된다'면서, 긴급조치 1호는 그 발동요건 및 목적이 현행 헌법뿐만 아니라 당시 헌법 제 53조에 위반하여 '긴급조치가 해제 내지 실효되기 이전부터 위헌'이었다는 것이다. 즉 긴급조치 발동은 박정희의 정치행위라 하더라도 유신헌법에 대한 국민적 저항을 탄압할 목적으로 발령한 행위여서 발령행위 자체가 위헌이라는 것이었다.

따라서 이번 판결은 일개 소부에서 종래 전원합의체 판결 및 헌법재판소 결정, 그리고 수많은 형사재심 무죄판결의 취지를 뒤집은 채 '성공한 쿠데타를 처벌할 수 없다'고 선언한 것이다. 이는 과거 김영삼 정부 하 정치검찰이 전두환 등에 대하여 성공한 쿠데타라고 하여 기소유예 등 처분을 내린 것과 같은 것으로, 고도의 정치행위이면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는다면 면죄부를 준 것에 다름 아니다.

말하자면, 발동요건 및 목적은 위헌이라면서 발동행위는 위헌이 아니라고 선언한 대표적인 指鹿爲馬판결<sup>1)</sup>에 다름 아니다. 박정희 군사정권의 긴급조치 발동행위가 고도의 정치행위로서 면죄부라면, 그 정치행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은 '고도의 정치행위'에 무모하게 도전한 자들이란 말인가. 위헌적인 '고도의 정치행위'에 침묵하라고 하는 것인가.

특히, 이번 판결은 전원합의체가 아닌 소부의 판단으로 기존 전원합의체 판결을 뒤집었으며, 중대한 대통령의 국가긴급권 발동행위의 위법성을 판단하면서도 이에 반한 원심판결, 그리고 위 전원합의체 판결 뿐 아니라 하급심에서도 대다수가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한 견해<sup>2)</sup>가 존재함에도 판결이유로 고작 6줄을 할애함으로써, 이번 판결이 유신헌법 및 긴급조치를 정당화하고 옹호하기 위해 졸속적으로 행해진 '고도의 정치성을 띤 판결'임을 노골화한 것<sup>3)</sup>이다.

이번 판결로써 선출되지 않는 권력으로서 사법부가, 과거 박정희 군사정권에 부여한 사법부가 그나마 해왔던 과거사의 진실과 화해를 짓밟고 있음이 명백히 하였다. 결국 대법원이 40년 전 대법원 법관<sup>4)</sup>이 근무하던 대법원과 마찬가지로 헌법이 부여한 국민의 기본권보장보다 정치권력의 정치행위를 보호하고, 법치주의 보다는 형식적 합법주의를 국민에게 강요하는 역사적 과오를 저지른 것이다.

1) 대법원은 긴급조치를 위헌이나 발령행위는 위헌이 아니라고 선언하였다. 특히 이번 긴급조치 대법원 판결을 한 재판부는 대법원 민사제3부인대 재판장 박보영, 주심 권순일, 민일영, 김신 대법관으로 구성되어 있고, 민일영 대법관은 긴급조치 제1호 전원합의체 판결(2010.12.16.선고 20-10도5986판결)의 일원으로 참여한바 있으며, 위 재판부의 민일영, 박보영, 김신 대법관 또한 긴급조치 제9호 전원합의체 위헌결정(2013.4.18.선고 2011초기689.결정)에 참여한바 있다. 법 논리의 심오함이 어디 숨어 있는 것인가.

2) 최근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3가합10678 판결. 제1민사부)은 '발동요건을 갖추지도 못한 채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어서 현행 헌법뿐만 아니라 당시의 유신헌법에도 위반되고, 그 발동의 과정과 기본권 침해정도에 비추어 볼 때 그 위헌성은 매우 중대하고 명백하다. 또한 망 입00과 입00을 비롯하여 긴급조치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은 수많은 희생자들에 대해 위와 같은 재심개시결정 및 재심무죄판결이 내려진 바탕에는 그들의 행위를 범죄로 인정하여 처벌한 것 자체가 부당하였다는 반성적 고려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면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하였다.

그 외에도, 백기완 긴급조치 위반 국가배상 사건에서도, 재판부는 (민사 제11부) '피고의 공무원인 박정희 대통령이 긴급조치 제1호를 각 발령한 행위는 유신헌법 제53조에서 정한 발동요건을 위반하고 긴급조치권의 목적상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서 그 직무집행 과정에서 저지른 위법행위에 해당하고, 그 외의 피고 공무원들이 위헌.무효인 긴급조치 제1호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원고 백00을 영장없이 폐포.구금하고 그 과정에서 원고 백00을 폭행한 행위 및 위헌.무효인 긴급조치 제1호에 터잡아 이 사건 1.2심 판결 등을 선고한 행위는 공무원이 직무집행 과정에서 저지른 위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한바도 있다. 극히 예외적 사건(계명대 건조 국가배상사건 대법원 2013다217962판결, 설훈 의원사건 서울고등법원 2014나2035578등)사건을 제외하고 긴급조치 국가배상 청구사건의 대다수는 위헌.무효인 긴급조치에 대한 배상을 인정하였다.

3) 구 인신구속에관한임시특례법(1963. 9. 30. 법률 제1410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에 따라 영장없이 체포구금된 피해자의 유족이 제기한 국가배상청구소송에서, 서울고등법원은 '이 사건 법률조항은 영장주의의 본질을 침해함이 명백하고, 국가가 이러한 위헌적인 법률을 제정하여 집행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였고, 그로 인하여 구체적 피해까지 발생하였다면 이는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할 것'이라고 판시하였고(서울고등법원 2013. 11. 7. 선고 2013나21408 판결), 대법원은 위 판결을 인정하고 국가의 상고를 기각한바 있다(대법원 2013다95896 판결).

4) 유신헌법 제101조 ①대법원에 부를 둘 수 있다. ②대법원의 법관의 수는 16인 이하로 한다고 하여 대법관이 아닌 대법원의 '법관'이었다.

#### 나. 애써 그간 소멸시효 판결을 외면한 외눈박이 판결

특히 이번 판결에서 원고가 체포구금상태가 종료된 후 30년이 경과하였다면서 소멸시효를 이유로 수사권한 없는 중앙정보부에 의한 체포·구금의 불법행위 책임을 부인하였다.

이는 진화위 결정시 등으로 시효기산점을 삼았던 울산보도연맹 사건이나 진도민간인희생사건(2013.5.16.선고2012다202819판결) 등에도 반할 뿐만 아니라 최소한 위 판결들이 적시한 시효정지규정은 유추한 6개월이라는 상당한 기간, 그리고 특별한 사정에 대한 판단조차 결여된 것이었다. 그럼에도 재판부는 소멸시효 기산점을 2010.12.16.긴급조치 위헌 판결시로 판단하면서 대한민국의 소멸시효 항변을 배척한 원심의 합리적 이유를 배척하고, 고작 판결이유 7줄로 원심 판단을 배척하였다. 이는 대법원이 그나마 진행해온 과거사 반성 내지 해결의 의지를 여지없이 부인한 것이다. 무엇이 그리 급하단 말인가.

#### 다. 본인소송에 가해진 사법 폭력

이번 사건은 소송대리인도 없이 개인이 진행한 본인소송임에도 대법원이 고작 몇장짜리 판결문으로써, 더욱이 발동의 불법행위에 6줄, 소멸시효에 7줄로 결단한 잔인성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대법원에 계류 중인 유죄판결을 받았던 긴급조치 피해자들의 국가배상사건이 수년째 계류 중일 뿐만 아니라 다양한 하급심이 있는 상태에서 굳이 본건에서 성급하고 성의 없이 판결을 하였어야 하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이번 판결은 본인소송인 만큼 주장 및 입증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으며, 판결이유 또한 몇 줄에 불과한 졸속적인 판결이기 때문에 긴급조치 등 과거사 전반에 대한 확립된 판결로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하급심은 이에 기속되어서는 아니 될 것이다.

#### 라. 끊임없는 퇴행, 유신의 품에 안긴 판결

- 불법행위 요건, 시효, 재판상 화해, 그리고 발동행위

사실 대법원의 이용훈 대법원장 체제에서 그나마 이뤘던 과거사 반성의 흐름을 바꾸고 이를 지우기 위한 끊임없는 시도는 이번만이 아니었다. 수사기관의 고문 가혹행위 등을 불법행위의 배상요건으로 내세우거나 민주화보상법상 재판상 화해규정을 적용하여 배상을 부인하였으며, 완도보도연맹 등 과거사 판결에 반하여 소멸시효를 애써서 축소하거나 요건을 강화하여 왔다.

이러한 대법원의 일련의 퇴행은 이명박 전 대통령에 의해 임명된 현 양승태 대법원장 체제의 유신 부활 내지 정당화의 기초에서 비롯된 것이며, 더욱이 최근 박상옥 대법관 임명제청에서 보듯이 박종철 등 과거 민주주의 투쟁과정에서 희생된 영혼을 욕보이고 있다.

#### 4. 선출되지 않은 권력, 대법원의 민주화, 독립성 보장을 위한 제안

피해자들은 박정희, 전두환 군사정권의 군화발에도 굴하지 않고 오로지 이 땅의 진정한 민주주의 쟁취를 위하여 젊음과 열정을 바쳤다. 그것이 어떠한 배상을 염두에 둔 것은 아니었다. 그럼에도 대법원 판결은 적어도 1987년 이후 형성된 민주주의를 짓밟고 청춘을 바친 피해자들이 살아온 명예와 가치를 부정하였다. 이는 유신의 부활이며, 사법부의 폭거라 아니할 수 없다.

##### 가. 대법원 민주화, 독립성 보장을 위한 법원 조직법 등 개정

이명박 및 박근혜 정부하에서 대법원의 보수화를 더욱 노골적이었다. 특히이명박 대통령에 의해 임명된 양승태 대법원장은 그 취임 이래 2012.4 시국선언 전교조 대전지부장 등에 대한 벌금형 확정 이래, 진도군 민간인 희생사건에서 시효 6개월 제시하는가 하면, 콜텍 대전 공장 노동자 정리해고 기각판결, 쌍용자동차 노동자 해고 무효소송 기각, 본 긴급조치 국가배상사건에 이르기까지 단지 과거사사건 뿐만 아니라 사회적 파급력이 있는 사건에서 개인의 권리 구제보다는 국가 내지 정부의 권한 유지·확대, 노동자 권익보다 경영자 판단을 중시하는 판결을 내리고 있는 것이다.

그런 면에서 이번 긴급조치 판결은 어쩌면 예정된 것이었다. 대법원의 구성이 이명박, 박근혜 정부 이래 보수일색으로 구성된 점도 있으나, 현행 법원조직법(제41조의 2)상 10명으로 구성되는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의 비민주적이고 폐쇄적인 구성에 있다. 10명으로 구성되는 후보추천위원회는 법무부장관, 대한변호사협회장외에도 선임 대법관, 법원행정처장,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학식·덕망 있는 자 3인, 대법관 아닌 법관 등 대법원장이 과반수를 넘는 위원을 구성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러한 후보추천위 구성의 폐쇄성 및 비민주성, 나아가 대법원 규칙에 따른 비공개 회의는 대통령- 대법원장- 대법관이 상명하복적 수직구조로서 정치권력의 영향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국민의 기본권 수호를 위한 결기는 사라지고 정치권력에 편승한 해바라기성 판결이 나오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일 수 있다. 대통령이 대법원장을 현행 헌법 개정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적어도 정치권력을 장악하면 사법부까지 장악할

수 있는 현행 법원조직법 및 대법원 규칙 개정을 통해서라도 사법부가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되어 '인권의 보루로서 국민의 기본권보장의무를 충실'히 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있어야 할 것이다.

#### 나. 대법원 판결에 대한 헌법소원 제기 검토

헌법재판소는, 대법원이 헌법재판소 위헌결정으로 효력이 상실된 구 소득세법 조항을 적용하여 청구인의 소득세과처분 취소소송을 기각한 대법원 판결에 대한 위헌선언을 구하는 헌법소원 사건(96헌마 172결정)에서, '따라서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법률을 적용하여 한 법원의 재판은 헌법재판소 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것일 뿐 아니라, 법률에 대한 위헌심사권을 헌법재판소에 부여한 헌법의 결단(헌법 제107조 및 제111조)에 정면으로 위배'되고, 따라서 '이 사건 대법원 판결은 헌법재판소가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하여 한정위헌결정을 선고함으로써 이미 부분적으로 그 효력이 상실된 법률조항을 적용한 것으로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재판임이 분명하므로 이에 대한 헌법소원은 허용된다'고 판시한바 있다.

물론 본 대법원 긴급조치 국가배상 판결이 과연 '위헌으로 결정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법률을 적용하여 한 재판'인지 내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반한 재판'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존재할 수 있고, 추가적인 법리적인 검토를 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긴급조치 발동요건 및 목적이 위헌. 위법이라고 판단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및 헌법재판소의 취지 또한 국가배상을 배제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 점, 달리 대법원 판결에 대하여 다룰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아니한 점, 나아가 '고도의 정치행위'의 사법심사 가부 및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취지의 기속력 등에 관련 선례를 만들 필요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당사자와 협의하여 헌법소원을 제기할 계획을 밝히는 바이다. 끝.

## [대법원 긴급조치 국가배상판결 규탄 기자회견문]

### 박정희 유신독재의 긴급조치 발령 행위에 국가 배상책임이 없다는 판결(대법 민사 3부)에 대한 유신헌법 긴급조치 피해자의 입장

1. 대법원은 2015년 3월 26일, 민사 제3부(재판장 박보영 주심 권순일, 민일영, 김신 대법관)(2012다48824판결) 판결에서, “유신헌법에 근거한 대통령의 긴급조치권 행사는 고도의 정치성을 띤 국가행위”로서, “국민 개개인의 권리에 대응하여 법적 의무를 지는 것은 아니므로”, “민사상 불법행위는 아니”라고 하였다.

2. 대법원의 이러한 판결은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생명과 인권을 보호하는 의무를 포기하고, 대한민국의 사법상황을 유신 독재시대로 돌려놓은 것이다. 이러한 지록위마(指鹿爲馬), 곡학아세(曲學阿世)의 판결은 준엄한 역사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3. 여기서 “고도의 정치 행위”라고 한 것은 이른바 “통치 행위”라서 현직 대통령의 아버지를 “처벌할 수 없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1995년 김영삼 정부 하 전두환 등에 대한 내란죄 고소에서, 당시 검찰은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는 논리를 폈으나, 헌법재판소 결정(1995.12.15 95헌마221)에서 “성공한 쿠데타도 처벌할 수 있다”고 하여 결국 전두환 등을 법정에 세운 전례를 떠올리게 한다.

속된 말로 “이기면 충신, 지면 역적”이라는 것이다. 우리는 여기서 이러한 논리가 대한민국의 역사에서 수많은 지도자와 대중을 괴롭혀온 것이기에 그에 대한 우리의 입지점과 시각만 다시 밝히려고 한다.

첫째, 박정희의 1972년 유신 선포와 헌법 공포는 이번 판결에서 검토되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판결문 중 6줄에서 그 이유를 드는데, “고도의 정치 행위” 라는 표현에서 상급자의 명령에 복종할 수 밖에 없는 하급 관리의 목소리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기소권 없다”고 한 검찰의 목소리 라면, 부당한 명령에 항변하거나 책임있게 판단할 능력도 실행능력도 없는, 영혼없는 관리의 소리로 보아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판결은 검사가 아닌 판사들의 판결입니다. 헌법과 법률과 양심에 따른 판결인지 따져보아야 합니다.

둘째, 국회 뿐 아니라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도 독립적인 헌법기관이므로 같은 수준에서, 기관 내부의 절차가 정당한지를 따져 보게 됩니다. 우선 이 판결은 2013년 3월 21일 헌법재판소 판결과, 4월 18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보다 낮은 수준의 결정입니다. 먼저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도 같은 결론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13년 4월 18일 이전에 임명된 대법관 박보영 김신 민일영(주심: 권순일 대법관은 2014. 9월 임명됨)과 양승태 대법원장(2011년 임명)은 그 때 자신도 참여하여 서명한 전원합의체 판결과 다른 판결을 내놓은 이유를 밝혀야 합니다.

셋째, 대통령 긴급조치 9호만이 아니라 1호 4호에 대해서는 국가 배상 판결이 이미 많이 내려졌습니다. 왜 동일한 사람 박정희에 의해서 내려진 1. 4호와 9호에 대한 판결이 달라졌는지도 해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에서도 대법원과 같은 결론인지, 자신의 이름 옆에 서명을 하고 국민 앞에 공표할 수 있는 결정인지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주시기 바랍니다.

4. “인권 범죄에 대한 국제 규범은 시효가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당신들이 역사의 심판을 면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드립니다. 긴급조치가 위헌 무효라고 판결하면서 대법원 전원 합의체에서, 화해의 정신으로 공동체의 기초를 다시 놓은 그 때의 정신을 되살려 놓으십시오. 국제사회의 언론과 감시단체들이, 한국의 상황을 이미 민주주의의 역행, 언론과 집회의 자유와 인권이 후퇴한 시기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당신의 이름을 후손들까지 부끄러워 할 대열에 끼워넣지 말고, 그래도 마지막 지조를 지킨 사람들 쪽으로 바꿔 놓기를 바랍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2015. 3. 30.

민변 긴급조치 변호단, 긴급조치 피해자 대책위, 4.9통일평화재단,  
포럼진실과정의, 민주화운동정신계승국민연대, 장준하특별법제정시민행동,  
한국전쟁유족회, 역사정의실천연대